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.>

성평등가족부
(교육과정등 집행기관)

제 호 년 월 일

수 신 ○○지방공소청 ○○지청장

제 목 **가해아동·청소년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**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해아동·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가해아동·청소년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	
	소속학교		직 업	
	결정사항			
이수결과	[] 교육 이수 완료, [] 부분이수(시간), [] 교육 미이수			
조치사항	교육 이수	교육기간		
		참여시간		
	교육 미이수	사유		
담당자	소 속		기관 전화번호	
	성 명		그 밖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	

성평등가족부장관·(교육과정등 집행기관의 장) 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